

서울특별시 문화재 찾기 시민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

의안 번호	793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5년 10월 30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서울특별시 차원에서 해외에 소재한 우리 문화재를 반환하기 위한 시민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, '09년도이후 일본, 영국, 프랑스, 카자흐스탄 등 해외방문을 통해 현지조사 등 해외 문화재 찾기 지원활동을 추진하여 왔음
- 나. 그러나 해외소재 문화재 반환과 관련된 사항은 국가 간 외교적인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지방정부 차원에서 시민위원회 활동을 수행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어 동 조례의 유지 필요성이 낮아 폐지 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「서울특별시 문화재 찾기 시민위원회 조례」를 폐지함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해당없음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협의사항

(1) 법무담당관(규제심사) : 규제사무 없음

(2) 조직담당관(위원회) : 해당없음

(3) 예산담당관(비용추계) : 해당없음

(4) 감사담당관(부패영향평가) : 평가제외

(5) 여성가족정책담당관(성별영향분석평가) : 해당없음

(6) 갈등조정담당관(공공갈등진단) : 의견없음

라. 기타

(1) 입법예고(2015.8.27 ~ 9.16) 결과 : 제출의견 없음

(2) 신·구조문 대비표 : 해당없음

(3) 비용추계 등 자료: 해당없음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문화재 찾기 시민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

서울특별시 문화재 찾기 시민위원회 조례는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